

G밸리패션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서

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“금천구”라 한다) 및 서울디자인재단(이하 “디자인재단”라 한다.)은 「G밸리패션지원센터」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한강 이남지역 봉제업체의 발전을 위해 “G밸리패션지원센터”를 운영함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 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“G밸리패션지원센터”의 성공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 및 기능) ① “금천구”는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9, 현대 아울렛 5층에 위치한 현 G밸리패션센터를 “G밸리패션지원센터”로 개명한다.

② “서울시”와 “디자인재단”은 “G밸리패션지원센터”를 남부권 봉제의류사업 지원을 위한 센터로 운영한다.

제3조(업무분장 및 비용부담) ① “서울시”는 “G밸리패션지원센터” 운영관련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필요한 운영비를 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한다.

② “디자인재단”은 “G밸리패션지원센터”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.

③ “금천구”는 “G밸리패션지원센터”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소유주(한국산업단지공단)에 납부할 임대료가 발생할 경우, 전액 부담한다. 아울러, 현재의 “G밸리패션지원센터” 공간 임대연장이 곤란할 경우 금천구에서 대체공간을 마련한다.

제4조(운영) ① “G밸리패션지원센터”의 운영방안은 “서울시”와 “디자인재단”에서 마련하되, 그 과정에서 “금천구”의 의견을 수렴한다.

② “금천구”는 “서울시”와 “디자인재단”이 G밸리패션센터 내 물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,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는 “서울시”와 “디자인재단”이 부담한다.

제5조(협약의 변경, 해지 등) ① 이 협약내용의 변경·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할 수 있다.

②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해석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합의에 따른다.

③ 이 협약에 법령(조례·규칙포함)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한 기관은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협약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협약의 효력 등)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② 각 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3부를 작성하고, “서울시”와 “금천구”, “디자인재단”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2월 28일

서울특별시(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)
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(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(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)

금천구청장 차 성 수 (인)

서울디자인재단(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)

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(인)